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2023. 4. 4.(화)

면정회보

[제2023-7호]

양보면

목 차

[총무부서]

- 신임 마을이장 업무지원을 위한 주민명부 제공 적정여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알림 1
- 2023년 국가 암검진 사업 안내 1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2
- 2023년 방역소독기 무상점검·수리 안내 3

[주민생활지원부서]

- 복지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협조 3

[산업경제부서]

- 산불재난 예방 홍보 철저 4
-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추진 안내 7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8
- 2023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추진 9

[민원부서]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10
-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11

총무담당

1

신임 마을이장 업무지원을 위한 주민명부 제공 적정 여부 사전 컨설팅감사의견 알림

강세은(880-6303)

신임이장의 행정기관 업무 요청사항 처리 및 협조 등 이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마을의 주민명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등에 따라 마을 이장에게 주민명부 제공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의견

행정기관이 이장의 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포괄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마을 이장에 대한 주민명부 제공은 적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마을 이장에게 주민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2023년 국가 암검진 사업 안내

박은지(880-6305)

- 검진기간 : 2023. 12. 31.까지
- 검진기관 : 지정된 암검진 병·의원(전국 가능)
- 검진 대상 및 방법
 -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대장암, 간암의 경우 1년, 6개월 주기
 -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대변검사(분변잠혈반응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 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월 보험료 직장 114,500원, 지역 61,000원 이하(2022년 11월 부과 기준)
 - * 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검진 비용 10% 본인 부담
 - *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문의사항 :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담당부서 055-880-6624

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박은지(880-6305)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대상 : 2023년 65세(1958년생) 도래자 중 폐렴구균 미접종자
- 접종장소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 접종비용 : 무료

4 2023년 방역소독기 무상점검·수리 안내

박은지(880-6305)

- 일 시 : 2023. 4. 6.(목) 09:30~17:00
 - 장 소 : 진교면 민다리체육공원(진교고등학교 뒤)
 - 점검업체 : 태흥실업, 세신실업(2개소)
 - 점검내용 : 소독기계 작동여부 점검 및 수리
 - 수리비용 : 보건소 부담
- ※ 점검일 이후 개별수리비용은 자율방역반 부담

주민생활지원담당

1 복지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협조

박지윤(880-6328)

- 복지위기가구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질병, 실직, 소득감소 등)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대상 등
- 지원내용 : 방문상담 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부서(055-880-632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협조사항 : 복지위기가구 발굴, 신청

산업경제담당

1 산불재난 예방 홍보 철저

김정숙(880-6312)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경계」 단계 발령(2023.3.30. 13:00)
 - ※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추진(군수특별지시 제1호)
- 산불방지대책 상황근무 및 산불감시원 운영현황
 - 과·단, 읍·면 직원 1/6 산불취약지 배치 운영
(봄철특별대책기간: 2023.3.1.~4.30 토·일, 공휴일)
 - 산불감시원 운영: 8명(초소 1, 기동 7)
- 하동군 산불발생 현황(2023.3.13.기준) : 49건, 143.6ha
-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현황(2022년12월~2023년3월)

계	운암리	장암리	감당리	우복리	통정리	박달리	지례리
93	8	7	11	10	33	16	8

- 주요 홍보 및 협조사항
 - 영농철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기 금지
 - ☞ 산 또는 산연접지(100m이내) 소각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산 연접 주택, 외딴집, 기계톱(불꽃) 등 장비 관리 철저
 - ☞ 현재 대부분 불법 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는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계도
 - 산림 작업자는 인화물지(담배, 취사 등) 휴대 금지
 - 산불예방 마을방송 매일 1회 이상 실시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 놓기 허가금지로 개정·시행(2022.11.15.)
- 붙임 : 봄철 산불예방 위한 알림[마을회관 게시용] 및 홍보 방송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알림

□ **봄철 특별대책기간 : 2023. 3. 1. ~ 4. 30.**

↳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주요 협조사항**

- 봄철 영농활동으로 인한 농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일절 금지
→ 산 또는 산연접지(100m이내) 소각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취약시간대(일출 전, 일몰 후)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소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
→ 현재 대부분 불법 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 산림이나 산연접지에 불관련 인화성 물질(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당부

□ **과태료 부과 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 1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 2호	30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 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 1호	10	20	2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 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 3호	10	20	20

□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신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 연접지 논, 밭두렁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둘째, 산림 내에서나, 산 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셋째, 산림 내에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ライター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넷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인화물질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합시다.

영농부산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간입니다.

만일 산연접지나 산림내에 불을 놓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게 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보면사무소 / ○○마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임기현(880-631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농가 ※ 주소지 기준

우리면 지원면적(ha)	이앙재배(ha)		직파재배(ha)	예산액(원)
	일반	친환경		
453	414.4	31.4	7.2	58,890,000

- 지원단가 : 130,000원/ha (전년동일) ※ 지원단가 초과 구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기간 : 2023. 3. ~ 6.
- 지원내용
 - 이앙재배농가 :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 직파재배농가 : 직파전용 제초제
 - 친환경재배농가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목록고시 된 친환경상자처리제
- 약제소요량 : 15kg/ha당 (상자당 사용량 50g, 300상자/ha)

○ 추진방법

- 전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약제 조사 실시(상품명과 수량 파악)
 - ※ 읍면 방해충 방제협의회 미개최
- 공개입찰(또는 수의계약)로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선택 약제 배부

○ 세부 추진계획

- 1) 마을별 전 농가 대상 희망약제 조사(서식 공문함 배부) : 4.5한
-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양보면이장협의회↔면) : 4.5한
 - 보조사업자가 입찰대행 요청하여 면에서 입찰 대행
- 3) 농약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 4.15한
- 4) 마을별 농약 공급량 및 공급일정 통보 : 4.15한
 - 사업면적 및 지원가능 수량을 초과하여 지원불가(15kg/ha)
- 5) 마을별 농약 공급 및 확인 : 4.30한
-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5.30한

<유의사항>

- 지원단가는 8,660원/kg이므로 초과 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매
(면적대비 추가 소요 약제는 농가별 자부담 구매)
- 농가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약제를 신청해야되며 마을 대표 임의로 선호 농약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상자처리제 농약 품목표(붙임 5)를 참고하되, 타 등록 약제도 지원 가능함 (농협계통단가 10,000원 미만 약제만 작성)
- 약제의 상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pis.rda.go.kr/>)활용(상표명으로 검색)

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임기현(880-6314)

- 신청기간 : 2023. 4. 3.(월) ~ 6. 30.(금)
- 지원대상 : 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3.8.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 지원단가 :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식 면사무소 비치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신청
-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①신청서, ②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후검증

4 2023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용화교육 추진

성인 (880-6313)

- 신청기한 : 2023. 4. 12.(수)까지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마을당 최대 1,000천원(강사료,재료비,다과료,프로그램비 등)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참여마을 : 8개소
 - 사업량 :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8회
 - 용화교육 : 용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등 주민참여형 교육 진행
 - 체험프로그램 : 마을 주민과 어울려 공동작업 수행 체험형 프로그램
(공예, 김장, 생활원예 등)

민원담당

1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여선모(880-6323)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시) 2023.1.10. 사망시 → 2023. 7. 31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고장소:**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신고 시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비치, 군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
차후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登記하더라도 취득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 없으며,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 등기
- 상속관련 취득세 세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농지 2.56%, 농지 외 3.16%
-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감면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
 - **상속으로 인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상속취득 후 2년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속취득일 기준 2년이상 농업 종사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직전연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시 가능)
 - 주민등록초본(상속취득일 기준 하동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소를 둔 지 2년 이상)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취득**
 -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1가구 1주택 확인서 제출
- 문의: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055-880-2277

2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여선모(880-6323)

- 우리면 체납세 현황(2023. 04. 01. 현재) : 409건/ 24,568천원
- 협조사항
 - 체납고지서 반송 대상자, 연락처 누락자 등 체납자 실태조사 협조
 -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자동이체 신청 홍보